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45,000,000	37,350,000
일반회계	800,000,000	24,000,000
특별회계	445,000,000	13,350,000
공기업특별회계	252,600,000	7,578,00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9,000,000	2,370,000
공영개발 특별회계	104,000,000	3,120,000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9,600,000	2,088,000
기타특별회계	192,400,000	5,772,000
주택사업 특별회계	435,000	13,050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9,045,000	271,350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4,480,000	134,400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1,000,000	630,000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50,000,000	4,500,00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1,240,000	37,200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6,200,000	186,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과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과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24,04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5,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